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18 - 09 - 063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한 12개사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18. 2. 21.

주 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②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③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처리자 식별·인증과 별도로 공인인증서, 보안토큰, 휴대폰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 One Time Password), 바이오정보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며, ④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 등 접근통제 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⑤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일시·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작성하여 월1회 이상 이를 확인·감독하고 시스템 이



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로그 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⑥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1년이 경과한 후 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2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피심인은 부터 동 웹사이트 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여 2017. 9. 20. 현재 명의 개인정보(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집 전화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 일반 현황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평 균
매출액(단위 : 천원)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에 의해 회원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피심인의 유출신고가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KISA)에 접수(2017.8.30.)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2017.9.20.)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사실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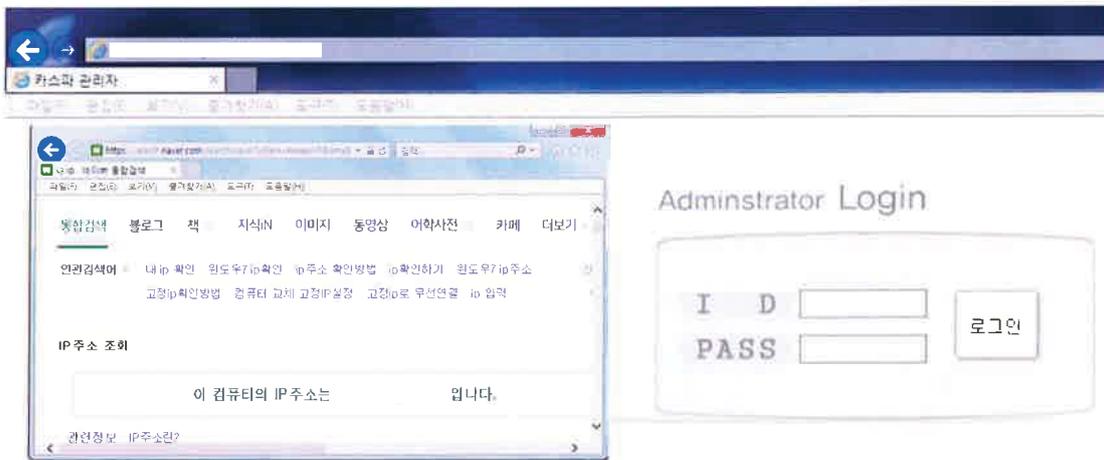
(접근권한 부여·말소) 피심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자(4명)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자 및 테스트계정을 16명에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말소하지 않았다.



(접근권한 기록보관)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및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았다.

(안전한 인증수단)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별도의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참고 1>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시 안전한 인증수단 미적용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 설치·운영) 피심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접근 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이 포함된 접근통제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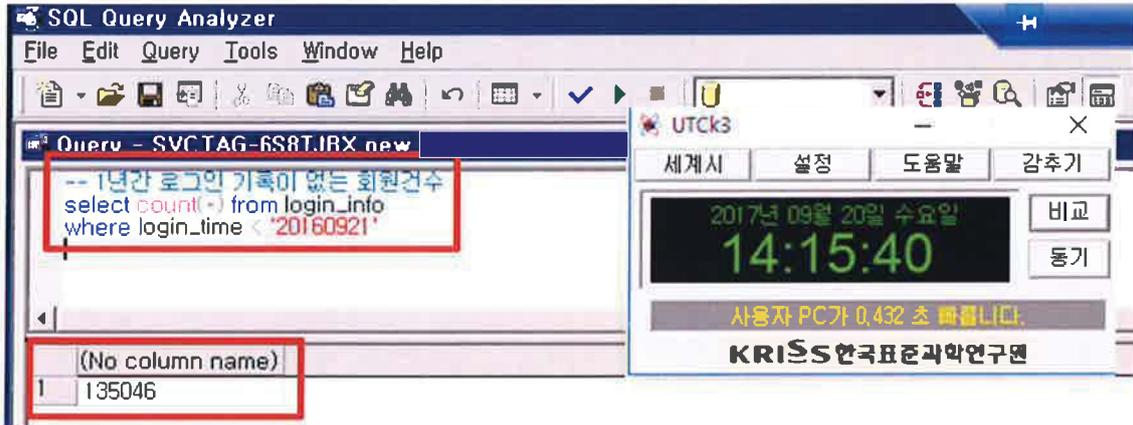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의 보관 및 점검을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았다.

다.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은 '17. 9. 20. 현재 1년 이상(마지막 접속이력이 2016.9.19. 이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건을 파기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다.

<참고 2>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수 검출 화면



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 1. 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8. 1. 17.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제2호)',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3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제2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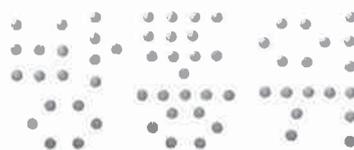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제1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 이하 ‘고시’) 제4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시 제4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4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시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2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휴직 등 인사 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계정 등 접근권한의 변경·말소 등이 필요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불완전한 접근권한의 변경 또는 말소 조치로 인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고시 제4조제3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관리대장 등에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 등에는 신청자 정보, 신청 및 적용 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고시 제4조제4항에 대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이용할 경우 유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인증과 더불어 공인인증서, 보안토큰, 휴대폰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 One Time Password), 바이오정보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인증수단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해설하고 있고,

고시 제4조제5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불법적인 접근(인가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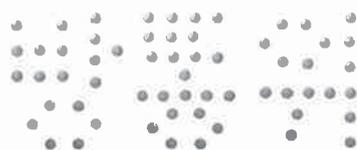
않은 자가 사용자계정 탈취, 자료유출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접근하는 것을 말함) 및 침해사고(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보안 운영체제(Secure OS), 웹방화벽, 로그분석시스템, ACL(Access Control List)을 적용한 네트워크 장비,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라도 접근 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신규 위협 대응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 적용 및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고시 제5조제1항에 대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정보주체 식별정보,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부여된 권한 유형에 따른 수행업무 등 포함)을 최소 6개월 이상 저장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29조제2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해설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에 대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개인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로그' 등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용약관 등을 통해 그 적용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설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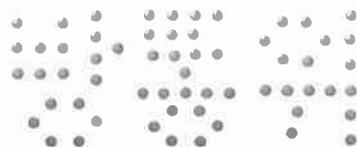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접근권한 부여·말소) 피심인은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음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고시 제4조제2항을 위반하였고,

(접근권한 기록)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5년간 보관하지 않음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고시 제4조제3항을 위반하였고,

(안전한 인증수단)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시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안전한 인증수단(ex. 보안토큰, 휴대폰인증, 일회용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단말기 IP인증 등)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고시 제4조제4항을 위반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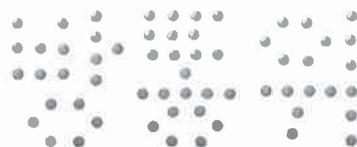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개인정보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탐지하도록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지 않음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고시 제4조제5항을 위반하였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의 보관 및 점검을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일시·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작성하여 월1회 이상 이를 확인·감독하지 않고,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로그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3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속기록),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고시 제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다.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개인정보의 파기 중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였다.



〈참고〉 피심인의 위반사항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접근 통제	§28①2호	§15②1호	퇴사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말소하지 아니한 행위(고시§4②)
	접근 통제	§28①2호	§15②1호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권한 부여·변경·말소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고시§4③)
	접근 통제	§28①2호	§15②1호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패스워드만을 이용토록 하여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아니한 행위(고시§4④)
	접근 통제	§28①2호	§15②2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고시§4⑤)
	접속 기록	§28①3호	§15③1호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작성하여 월1회 이상 감독하지 않고, 최소 6개월 이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행위(고시§5①)
	유효기간	§29②	§16②	1년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 분리·보관하지 않은 행위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②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③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처리자 식별·인증과 별도로 공인인증서, 보안토큰, 휴대폰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 One Time Password), 바이오정보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며, ④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 등 접근 통제 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⑤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일시·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작성하여 월1회 이상 이를 확인·감독하고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로그 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⑥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1년이 경과한 후 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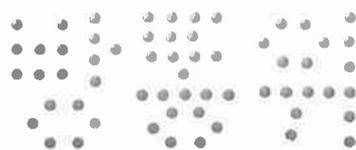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 및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제2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처리지침' 제7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너. 법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더. 법 제29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4호	1,000	2,000	3,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처리지침’ 제9조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가 2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 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지침’ 제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할 때,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이므로 기준금액의 5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처리지침’ 제8조는 ▲위반행위의 결과가 과실에 의한 경우,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위 두 가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 규모, 위반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지침’ 제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할 때, 피심인의 사업규모가 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준금액에서 50%를 감경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업종별 기준에 따라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사업자(전자상거래, 방송통신업 등)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과태료 가중	과태료 감경	최종 과태료
§28①2·3호	1,000만원	500만원	없음	1,500만원
§29②	1,000만원	없음	500만원	500만원
계				2,0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위반에 대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및 제76조제1항제3호·제4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위원장	이 효 성	
부위원장	허 욱	
위원	김 석 진	
위원	표 철 수	
위원	고 삼 석	